

군산시의회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이 학 진

2010년 4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30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3항 관련)

1. 보 건 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나운3동 153-8	군산시 일원
대야분소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8-2	군산시 일원

2. 보 건 지 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11-4	옥구읍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23-39	옥산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3	회현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16-1	임피면 일원
서수면 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797-6	서수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61-2	개정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83-2	성산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옥곶리 452	나포면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237-1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294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333-5	옥도면 선유도리 인근 일원
옥서면 통합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15-10	옥서면, 미성동 일원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오식도동 513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 지역관리원 내	오식도 및 비응도 공단 및 새만금 지역 일원

3. 보건진료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금 성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85-1	구평,금성,외류,내류,평유,죽동
금 암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404-12	월암,원화등,석화,신구,마포,하금암,상금암
당 북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860-5	원당,회당,한림,백석,선교,신당
대 광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36-22	상광,중광,원두,삼길,광산,원접산,신광
대 차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316-10	대차,소차,경창,함열촌,고산촌, 신촌,상리
무녀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0	무녀도1,무녀도2
열대자 보건진료소	군산시 산북동 2643-4	산북동 24,25,26,27통(옥성,신창,금성,평화) 오식도동 일원
비안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240	비안도,두리도
상장곶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마룽리 438-2	상장곶,하장곶,원용귀,신중용귀,운원
성 덕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 106-1	성덕,황동,요동,상흥
신 당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305-5	표산,용화,신학당,신당,풍신,풍성,구을
신시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05	신시도
와 룡 보건진료소	군산시 개정면 윤희리 408-1	와룡,당산,송호1,송호2,동정
연 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55	연도
우 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5-48	신평,원이곡,우포,신기,김제촌,가산,개정
원나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3	원나포,옥동,혜곡,신방,원장산,서지,외촌,군둔
월하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3-4	옥삼,월하산,오봉,중야,용연
증 석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180-3	증석1,증석2,구북,방채,남중, 오산촌,신기촌
창 오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28-1	창오,창안,상작,산곡,대명,우곡,산남,작촌,구작
술 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477-4	하전,중전,상정,양지,주산,금암,상주,계산,서항 중갈,상갈,하갈
하 제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86-11	하제,중제,난산,신난산

신·구조문 대조표

현			개 정 안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3항 관련) 1. ~ 2.(생략) 3. 보건진료소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3항 관련) 1. ~ 2.(현행과 같음) 3. 보건진료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금성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85-1	구평,금성,외류,내류,평유,죽동	금성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85-1	구평,금성,외류,내류,평유,죽동
금암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404-12	월암,원화등,석화,신구,마포,하금암,상금암	금암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404-12	월암,원화등,석화,신구,마포,하금암,상금암
당북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860-5	원당,회당,한림,백석,선교,신당	당북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860-5	원당,회당,한림,백석,선교,신당
대광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36-22	상광,중광,원두,삼길,광산,원접산,신광	대광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36-22	상광,중광,원두,삼길,광산,원접산,신광
대차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316-10	대차,소차,경장,함열촌,고산촌,신촌,상리	대차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316-10	대차,소차,경장,함열촌,고산촌,신촌,상리
무너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무너도리 20	무너도1, 무너도2	무너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무너도리 20	무너도1, 무너도2
열매자 보건진료소	군산시 산북동 2643-4	산북동 24, 25, 26, 27동(옥성, 신창, 금성, 평화) 오식도동 일원	열매자 보건진료소	군산시 산북동 2643-4	산북동 24, 25, 26, 27동(옥성, 신창, 금성, 평화) 오식도동 일원
비안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240	비안도, 두리도	비안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240	비안도, 두리도
상장근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438-2	상장근, 하장근, 원용귀, 신중용귀, 윤원	상장근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438-2	상장근, 하장근, 원용귀, 신중용귀, 윤원
성덕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산 106-1	성덕, 황동, 요동, 상흥	성덕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산 106-1	성덕, 황동, 요동, 상흥
신당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305-5	표산, 용화, 신학당, 신당, 풍신, 풍성, 구울	신당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305-5	표산, 용화, 신학당, 신당, 풍신, 풍성, 구울
신시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4	신시도	신시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4	신시도
와룡 보건진료소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408-1	와룡,당산,송호1, 송호2, 동정	와룡 보건진료소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408-1	와룡,당산,송호1, 송호2, 동정
연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55	연도	연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55	연도
우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5-48	신평, 원이곡, 우포, 신기, 김계촌, 가산, 개정	우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5-48	신평, 원이곡, 우포, 신기, 김계촌, 가산, 개정
원나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3	원나포, 옥동, 해곡, 신방, 원장산, 서지, 외촌, 군둔	원나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3	원나포, 옥동, 해곡, 신방, 원장산, 서지, 외촌, 군둔
월하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3-4	옥삼, 월하산, 오봉, 중앙, 용연	월하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3-4	옥삼, 월하산, 오봉, 중앙, 용연
증석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180-3	증석1, 증석2, 구복, 방채, 남중, 오산촌, 신기촌	증석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180-3	증석1, 증석2, 구복, 방채, 남중, 오산촌, 신기촌
창오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28-1	창오, 창안, 상작, 산곡, 대명, 우곡, 남, 작촌, 구작	창오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28-1	창오, 창안, 상작, 산곡, 대명, 우곡, 남, 작촌, 구작
하전 보건진료소	군산시 임피면 숲산리 304-5	하전,중전,상정,양지,주산,금암,상주,계산,서황중갈,상갈,하갈	숲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임피면 숲산리 477-4	하전,중전,상정,양지,주산,금암,상주,계산,서황중갈,상갈,하갈
하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86-1	하계, 중계, 난산, 신난산	하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86-1	하계, 중계, 난산, 신난산

군산시의회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이 학 진

2010년 4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31호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관·과·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안 심사의뢰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1. 입법하고자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 내용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시보에 게재하되, 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및 신문·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

되어야 하는 입법안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업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의)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서면으로(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해당 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

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39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이 학 진

2010년 4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32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로 하고, 같은 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하고, 같은 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4조 본문 중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산시의회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이 학 진

2010년 4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33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세
- 2. 지방소득세
- 3. 재산세
- 4. 자동차세
- 5. 주행세
- 6. 담배소비세
- 7. 도축세

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목적세의 세목은”을 “목적세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하고,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각각 “사업소”로 하며, “사업장을”을 “사업소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 중 “사업장을”을 “사업소를”로 한다.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 176조의 8제 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2조와 제2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절의2(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3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 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3조의2(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3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와 제24조를 각각 제24조와 제24조의2로 한다.

제28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군산시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를 “감면 조례”라 한다.

제2장제4절(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조례 제880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 목) ① (생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도축세 7. 담배소비세</p> <p>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사업소세</p> <p>제18조(납세의무자) ① <u>균등할의</u>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u>사무소 또는 사업소를</u>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u>사무소 또는 사업소를</u> 둔 개인(이하 <u>사업장을</u> 둔 개인 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② <u>소득할의</u>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p>	<p>제3조(세 목) ① (현행과 같음) ②보통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p> <p>③목적세는 ----- 1.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18조(납세의무자) ① <u>균등분</u>----- -- ----- ----- <u>사업소</u>----- ----- ----- ----- ----- <u>사업소</u>----- ----- <u>사업소를</u> ----- -----</p> <p>② <u>재산분의</u>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u>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u>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p>	<p><u>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u> 법령 또는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u>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u> ①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p> <p>②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	-----

제20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 가. (생략)
-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신 설>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 가. (현행과 같음)
- 나. --- 사업소를 ----- : -----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p>제21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p>제21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현행	개정안
<p>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다.</p> <p>⑤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년도 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 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p> <p>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농업소득세</p> <p>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 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p> <p>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삭 제></p>
<p>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액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p> <p>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30></p> <table border="0"> <tr> <td><과세표준></td> <td><세율></td> </tr> <tr> <td>400만원 이하</td> <td>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td> </tr> <tr> <td>400만원 초과</td> <td>12만원 + 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1천만원 이하</td> <td>72만원 + 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0</td> </tr> <tr> <td>1천만원 초과</td> <td>672만원 + 4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td> </tr> <tr> <td>4천만원 이하</td> <td>1천872만원 + 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td> </tr> <tr> <td>4천만원 초과</td> <td></td> </tr> <tr> <td>8천만원 이하</td> <td></td> </tr> <tr> <td>8천만원 초과</td> <td></td> </tr> </table> <p>제47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2만원 + 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0	1천만원 초과	672만원 + 4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4천만원 이하	1천872만원 + 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p><삭제></p> <p><삭제></p>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2만원 + 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0																		
1천만원 초과	672만원 + 4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4천만원 이하	1천872만원 + 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현행	개정안
<p>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제51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 3 장 목 적 세 제 2 절 사업소세 제95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계기 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p> <p>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p> <p>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p> <p>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p> <p>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p> <p>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p> <p>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제 3 장 목 적 세 <삭 제> <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 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p><삭 제></p>
<p>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군산시시세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p><삭 제></p>

현행	개정안
<p>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5. 비과세 및 감면사유</p> <p>6. 기타 필요한 사항</p> <p>부칙(2009.06.23 조례 제880호)</p> <p>제3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u>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u>에 한하여 적용한다.</p>	<p>부칙(2009.06.23 조례 제880호)</p> <p>제3조(적용기한) -----</p> <p>----- <u>2009년도 및 2010년도</u> -----</p> <p>-----</p> <p>---</p>

군산시의회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이 학 진

2010년 4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34호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문화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 시설”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문화재 중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문화재를 말한다.
2. “관리·운영”이란 문화재 운영 시설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등을 말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조(시설의 운영) ① 문화재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이용) 시설의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행사 및 전통문화예술재현과 관련한 사업

- 2. 소장품의 전시·관람 및 지역 역사예술문화 보존사업
- 3. 기타 문화예술관광 선양과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관리 책임)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문화재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의 보존 및 운영·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와 관람료)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와 관람료 할인 및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 2. 시장이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민 및 수행자가 사용할 경우
- 3. 그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민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단체, 사업자에 한 해 이용료와 관람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와 관람료의 반환)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와 관람료를 반환한다.

제9조(이용 및 관람 시간) ① 시설은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② 시설의 이용 및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위탁 관리

제10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선정한다.

제11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목적, 위탁기간, 위탁내용, 관리책임 및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각종 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정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업비 보조)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망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 또는 감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이 학 진

2010년 4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453호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자에게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작성 예시

군산시 공고 제 호

군산시 ○○○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안 전문을 첨부하거나,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3. 의견제출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과(전화 : ○○, FAX : ○○, 전자우편 :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과 ○○담당 (전화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까지

나. 장소

다. 공청사항

라. 발언자수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군산시장(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군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자치법규안 검토 협의 요청서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제안부서		담당자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 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골자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붙임 자치법규안 1부. 끝.

군 산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 g/ m² 재활용품)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34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4. 9.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 : 소룡동 772-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소룡6통 도로 개설공사	소로 1-124	10	576	10	219	1,917	
	중로 2- 34	15	327	15	127	1,989	
	소로 1-121	10	304	10	129	1,343	
소 계					475	5,249	

3.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9. 5. ~ 2012.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룡6통 도로개설)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소룡동	1576	도	50,888.6	119.0		(국) 군산시			
2	"	1003	구	19,938.0	1,141.0		농수산부			
3	"	758-2	답	40.0	40.0		(국) 군산시			
4	"	806-3	대	64.0	64.0	임종술	군산시 소룡동 806-4			
5	"	802-1	대	82.0	82.0		(국) 군산시			
6	"	757-1	답	29.0	29.0		(국) 군산시			
7	"	801-1	대	22.0	22.0		(국) 군산시			
8	"	784-1	대	49.0	49.0		(국) 군산시			
9	"	756-4	답	16.0	16.0		㈜ 신도시 종합건설			
10	"	775-2	답	83.0	83.0		(국) 군산시			
11	"	756-2	답	15.0	15.0		㈜ 신도시 종합건설			
12	"	774-7	답	73.0	73.0		(국) 군산시			
13	"	755-1	답	32.0	32.0		㈜ 신도시 종합건설			
14	"	754-1	답	56.0	56.0		(국) 군산시			
15	"	773-2	답	83.0	83.0		(국) 군산시			
16	"	753-1	답	49.0	49.0		(국) 군산시			
17	"	772-2	답	82.0	82.0		(국) 군산시			
18	"	771-2	답	77.0	1.0	장정자	군산시 해망동 999-109			
19	"	772	답	4,603.0	1,899.0	김종운	군산시 소룡동 1476			
20	"	771	답	4,484.0	90.0	홍종목외 7인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668			
21	"	832-5	잡	2,314.0	14.0	전정임	군산시 나운동401삼성@102/1301			
22	"	833-2	잡	1,366.0	1,329.0		(국) 군산시			
	합계				5,368.0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소룡6통 도로개설)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소룡동	806	건물	스라브	104.8㎡	등기	임종술			
2	소룡동	806	건물 (부속사)	스라브	7.12㎡	미등기	임종술			
3	소룡동	1003	창고	스레트	6.3㎡	미등기	임종술			

군산시 고시 제2010 - 36호

고 시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일

군 산 시 장

I.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9,190,106	-	599,190,106	100.0		
공업 지역	소계	27,589,437	증) 50,136	27,639,573	4.6	
	전용공업지역	22,734,394	증) 50,136	22,784,530	3.8	
	일반공업지역	1,214,780	-	1,214,780	0.2	
	준공업지역	3,640,263	-	3,640,263	0.6	
미 지 정	571,600,669	감) 50,136	571,550,533	95.4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m ²)	용적율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전용공업지역	오식도동 812-2	미지정	전용공업지역	50,136	250% 이하	• 공유수면 매립완료로 용도지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함

II. 군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 실음생략.
끝.

군산시공고 제2010- 529호

보 상 계 획 공 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군산시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 월 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임피대령~신정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군 산 시 장
3. 보상 시기 : 2010년 6월 중순경 ~ 2011년 12월(예정)
4. 보상 방법 :
 - 가. 공인감정평가업자 2명을 선정하여 평가액에 의한 소유자별 보상
 - 나.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1명 선정
 - 토지소유자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5. 보상 절차 : 협의보상계약에 의한 보상
6. 열람 기간 : 2010. 4. 19. ~5. 8. (20일간)
7. 열람 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 063-450-4355)
8. 기타 사항 : 토지 및 물건조서는 군산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음.

군산시 공고 제2010 - 557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5.

군 산 시 장

- 1. 공인폐기사유: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 2. 공인폐기등록 연월일 : 2010. 4. 15
- 3. 폐기공인 및 인영(1점)

공 인 명	구 분	글씨·규격	인 영	관리부서 (폐기부서)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장의인	특수공인 폐 기	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농 정 과

군산시청 공고 제2010 -571호

보상계획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보행자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1.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2. 공사명 및 사업구간

공사명	사업구간	담당부서	연락처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보행자도로)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22-1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26-4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27-60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0-4436

- 3. 열람장소 :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 4. 열람기간 : 2010. 04. 15 ~ 2010. 04. 29 (14일간)
- 5. 보상시기 : 추후 개별통지
 - ※ 보상시기는 연차별 예산확보 등의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토지 조서 : 붙임 참고
 - ※ 개인별 보상대상(사유지)은 개별 통지함
-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이 상의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협의합니다.

나.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국유지는 추천대상에서 제외)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010. 04. 29일 이내에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주택및휴대폰)	평가업자
	지번	면적(㎡)	주소	성명			

다. 공사 위치 및 보상시기등 기타사항은 063-450-4436으로 문의하시고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 기간내에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4.15.

군 산 시 장

지구명 : 금강호 관광지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m ²)		권리자		비고
	시	면	리	지번			총	편입	주 소	성명	
1	군산	성산	성덕	422	-	1	전	298	155	농업진흥공사	국유지
2	"	"	"	422	-	3	전	770	76	농업진흥공사	국유지
3	"	"	"	423			전	152	116	농업진흥공사	국유지
4	"	"	"	424			전	374	356	농업진흥공사	국유지
5	"	"	"	426	-	1	답	3,660	184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6	"	"	"	427	-	10	답	193	71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7	"	"	"	427	-	7	답	3,790	42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8	"	"	"	427	-	8	답	1,366	58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9	"	"	"	427	-	59	답	276	255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10	"	"	"	427	-	60	답	2,252	197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11	"	"	"	427	-	62	답	703	436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12	"	"	"	148	-	1	임	7,431	4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13	"	"	"	150	-	1	임	259	18	농업진흥공사	국유지
14	"	"	"	426	-	2	답	2,443	620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15	"	"	"	425			답	4,039	1,923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16	"	"	"	425	-	2	답	1,091	655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17	"	"	"	426	-	14	답	1,228	42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18	"	"	"	426	-	13	답	1,112	99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19	"	"	"	426	-	12	답	2,613	95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20	"	"	"	426	-	15	답	110	94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21	"	"	"	426	-	4	답	332	239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22	"	"	"	427	-	61	답	418	418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23	"	"	"	427	-	26	도	45	33	농업진흥공사	국유지
24	"	"	"	426	-	10	도	99	70	농업진흥공사	국유지
25	"	"	"	426	-	18	답	256	256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26	"	"	"	152	-	14	임	1,654	130	군산시 개북동 8-5	강옥자
27	"	"	"	152	-	9	임	1,477	75	농업진흥공사	국유지
28	"	"	"	426	-	20	도	30	30	농업진흥공사	국유지
29	"	"	"	426	-	7	답	2,152	198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30	"	"	"	426	-	9	도	5	5	농업진흥공사	국유지
31	"	"	"	426	-	5	답	64	64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32	"	"	"	152	-	13	임	1,462	519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240-18	박병배
33	"	"	"	426	-	8	도	68	45	농업진흥공사	국유지
34	"	"	"	426	-	17	답	154	155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35	"	"	"	426	-	16	답	114	115	한국농촌공사	국유지
									7,848		

군산시 공고 제2010- 575호

운행제한차량공고

도로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제한차량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군 산 시 장

1. 대상도로 : 군산시 관내 차량운행 전도로
2.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축하중이 10톤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 차량의 폭이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
 - 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3. 제한기간 : 2010. 4. 5 00:00시 부터 별도 공고시 까지
4. 제한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한
5. 기 타 : 제한차량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산시 건설과(450-4481, 62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633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 4. 16.

군 산 시 장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장동 52-74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 2)명 칭 : 미장동 파인빌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
 - 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폭원(m)	연장(m)				비 고	
			결정	완료 (도보 07.7.6)	기인가 (도보 08.5.9)	금회인가		미개설
도 로	중로2-29	15~17.5	593 (144)	288 (폭 15m)	305 (폭 15m)	144 (확폭 15m → 17.5m)	0	폭2.5m 연장144m 확장공사
	소로1-95	10	103			103	0	
소 계			696			247		

- 라.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5 . ~ 2013. 5.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등기부등본)		소유자 (토지대장)		비 고
	시	동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군산	미장	53-40	도	882	121	군산시	국			
2	"	"	52-74	창	6,117	489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 한솔아파트 101호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			
3	"	"	52-75	도	449	57	군산시청	국			
4	"	"	52-73	도	796	173	군산시청	국			
5	"	"	52-5	답	1,095	187	미장동 411	안동욱			
6	"	"	52-71	도	582	163	군산시청	국			
7	"	"	52-4	답	784	4	군산시 경암동 572-100	한상수			
8	"	"	465	도	256	24	농수산부	국	농수산 부	국	
9	"	"	456	구	2,051	98	농수산부	국			
10	"	"	397-1	답	910	476	군산시 중앙로 3가 34	장강익			
11	"	"	396-3	답	2,102	162	군산시 중앙로 3가 34	장강익			
12	"	"	396-2	답	1,454	47	군산시 미장동 396-2	대한예수장로회 군산대한교회			
13	"	"	396-39	답	305	49	군산시 미장동 396-2	대한예수장로회 군산대한교회			
14	"	"	396-37	답	1,149	541	군산시 미장동 396-2	대한예수장로회 군산대한교회			
15	"	"	396-19	답	1,512	115	군산시 나운동 155-6 롯데아파트 302동502호	유영근			
16	"	"	396-1	답	595	237	군산시 나운동 155-6 롯데아파트 302동502호	유영근			
17	"	"	396-31	답	430	27	군산시청	국			
계					17	2,970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634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 4. 16.

군 산 시 장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공영사업과, 옥서면사무소
-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선연리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 2)명 칭 : 군산 공항로 개설 공사
 - 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도 로	중로1-99	24.9	2,257	24.9	2,257	104,817	
소 계					2,257	104,817	

라.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공영사업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5. ~ 2015. 5.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450-4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사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 용	
계	-		-		23,068	4,021.4		-			
1	옥서	옥봉	1772-16	답	2,908.0	217.2		군산시			
2	"	"	1772-15	답	1,785.0	326.3		군산시			
3	"	"	1794-1	구	428.0	60.9		국(농림수산부)			
4	"	"	1773-21	답	997.0	1.3		군산시			
5	"	"	1773-20	답	331.0	33.3		국(재무부)			
6	"	"	1773-18	답	2,144.0	318.0		군산시			
7	"	"	1773-16	답	774.0	102.6		군산시			
8	"	"	1773-15	답	1,785.0	551.2		군산시			
9	"	"	1795-1	도	346.0	128.6		국(농림수산부)			
10	"	"	1773-14	답	164.0	164.0		군산시			
11	"	"	1796-1	구	178.0	54.8		국(농림수산부)			
12	"	"	1774-14	답	1,549.0	337.6		군산시			
13	"	"	1774-12	답	1,159.0	215.2		군산시			
14	"	"	1780-1	도	474.0	64.0		국(농림수산부)			
15	"	"	1764-15	답	491.0	76.3		군산시			
16	"	"	1764-14	답	1,411.0	347.9		군산시			
17	"	"	1764-13	답	210.0	21.9		군산시			
18	"	"	1778-1	구	364.0	54.7		국(농림수산부)			
19	"	"	1763-5	답	2,274.0	289.6		군산시			
20	"	"	1763-4	답	566.0	0.6		군산시			
21	"	"	1773-24	답	79.0	79.0		군산시			
22	"	"	1774	답	166.0	8.1		군산시			
23	"	"	1773-26	답	447.0	447.0		군산시			
24	"	"	1773-1	답	1,994.0	100.4	고산법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82-34	옥구 농협	삼 천 팔 백 만 원	근저당
25	"	"	1796-2	구	44.0	20.9		국(농림수산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 관리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관리 내용	
계	-		-		28,361	9,257.8		-			
26	옥서	옥봉	1795-2	도	120.0	100.0		국(농림수산부)			
27	"	"	1773-23	답	80.0	80.0		군산시			
28	"	"	1765-21	답	245.0	1.0		군산시			
29	"	"	1773-25	답	461.0	461.0		군산시			
30	"	"	1773	답	782.0	51.9	고산범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82-34	옥구 농협	삼천 팔백 만 원	근저당
31	"	"	1780	도	2,986.0	299.6		국(농림수산부)			
32	"	"	1765-28	답	1,811.0	1,811.0	이종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0			
33	"	"	1765-10	답	658.0	149.8	이종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0			
34	"	"	1765-29	답	1,338.0	161.1	이종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0			
35	"	"	1765-26	답	503.0	503.0	이종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0			
36	"	"	1765-9	답	411.0	42.8	이종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0			
37	"	"	1765-27	답	140.0	48.8	이종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0			
38	"	"	1765-24	답	499.0	499.0		군산시			
39	"	"	1765-25	답	42.0	28.8	길정자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14-3			
40	"	"	1765-8	답	501.0	41.9	길정자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14-3			
41	"	"	1765-23	답	681.0	681.0	추종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0			
42	"	"	1765-7	답	1,041.0	72.6	추종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0			
43	"	"	1784	구	2,955.0	1,091.5		국(농림수산부)			
44	"	"	1765-22	답	577.0	577.0	추종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0			
45	"	"	1765-6	답	3,238.0	171.5	추종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0			
46	"	"	1766-16	답	47.0	47.0		군산시			
47	"	"	1766-6	답	3,984.0	31.4	전화성	옥서면 옥봉리 510			
48	"	"	1766-15	답	1,006.0	1,006.0		군산시			
49	"	"	1766-5	답	3,021.0	66.1	고순자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			
50	"	"	1766-13	답	1,234.0	1,234.0		군산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계	-		-		44,138.2	7,441		-			
51	옥서	옥봉	1766-4	답	184.0	42.4	이재희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72			
52	"	"	1766-14	답	1,300.0	41.9	이재희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72			
53	"	"	1766-11	답	600.0	600.0		군산시			
54	"	"	1766-3	답	295.0	19.2	이순매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58			
55	"	"	1766-12	답	414.0	22.8	이순매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58			
56	"	"	1766-9	답	1,822.0	1,822.0		군산시			
57	"	"	1766-2	답	1,753.0	229.4	이순매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58	옥구 농협	일천칠백만 원	근저당
58	"	"	1766-10	답	433.0	140.7	이순매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58			
59	"	"	1766-8	답	942.0	942.0	이종철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52-5			
60	"	"	1766-1	답	3,062.0	380.5	이종철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52-5			
61	"	"	1785	도	1,290.0	249.8		국(농림수산부)			
62	"	"	1767-7	답	94.0	94.0	장덕술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2-1			
63	"	"	1767	답	3,883.0	116.1	장덕술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2-1			
64	"	"	1788	구	2,696.0	69.9		국(농림수산부)			
65	"	"	1787	도	2,348.0	62.2		국(농림수산부)			
66	"	"	1786	구	932.0	158.3		국(농림수산부)			
67	"	"	774-2	답	172.0	172.0	한운재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1			
68	"	"	774	답	2,429.0	260.8	한운재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1			
69	"	"	1766	답	2,307.0	327.2	전화성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540			
70	"	"	670	답	4,349.0	204.9	전화성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540			
71	"	"	1781	도	3,178.0	697.7		국(농림수산부)			
72	"	"	1783	구	711.0	711.0		국(농림수산부)			
73	"	"	1676-10	천	6.0	6.0		국(농림수산부)			
74	"	"	2069	차	383.4	39.7		군산시			
75	"	"	2071	도	8,554.8	30.5		군산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계	-		-		30,280	12,286.5		-			
76	옥서	옥봉	769-4	답	2,493.0	2,493.0	김상윤	군산시 소룡동 893			
77	"	"	769-6	답	879.0	91.1	김상윤	군산시 소룡동 893			
78	"	"	769-1	답	786.0	119.9	김상윤	군산시 소룡동 893			
79	"	"	769-7	답	202.0	202.0		군산시			
80	"	"	769-2	답	3,424.0	8.5	윤복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00			
81	"	"	773-1	전	119.0	119.0	한운재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1			
82	"	"	773	전	922.0	23.5	한운재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1			
83	"	"	772-1	전	1,247.0	1,247.0	한운재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1			
84	"	"	772	전	945.0	23.5	한운재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1			
85	"	"	784-1	전	496.0	496.0	한운재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1			
86	"	"	784	전	218.0	12.8	한운재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1			
87	"	"	785-2	전	333.0	333.0		군산시			
88	"	"	785	전	533.0	13.3	이석조	군산시 서흥남동 고려타운2차@ 5동 107호			
89	"	"	786-9	전	470.0	470.0	오경섭	군산시 금동10 동신@ 가동 803호			
90	"	"	786-4	전	953.0	6.6	오경섭	군산시 금동10 동신@ 가동 803호			
91	"	"	786	전	1,309.0	1,309.0	박이례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8			
92	"	"	786-8	전	367.0	367.0	강원식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49			
93	"	"	786-3	전	955.0	2.5	강원식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49			
94	"	"	786-7	전	174.0	174.0	김명철 최일신 등 용 협 조 합	군산시옥서면 옥봉리 1280 군산시 해망동 1003-45	고완복	삼천오백만	근저당
95	"	"	786-2	전	861.0	5.3	김명철 최일신 등 용 조 합	군산시옥서면 옥봉리 1280 군산시 해망동 1003-45	고완복	삼천오백만	근저당
96	"	"	787	전	840.0	840.0	이병철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00			
97	"	"	788-1	답	1,411.0	1,411.0	최재중 김신환 등 용 조 합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8 군산시 경장동 464-1,2	옥서 새마을 금고	삼천오백만	근저당
98	"	"	788	답	1,382.0	109.4	최재중 김신환 등 용 조 합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8 군산시 경장동 464-1,2	옥서 새마을 금고	삼천오백만	근저당
99	"	"	1656-69	구	2,279.0	2,279.0		국(농림수산부)			
100	"	"	1656-20	구	6,682.0	130.1		국(농림수산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계	-		-		152,284	24,904.8		-			
101	옥서	옥봉	790	답	238.0	238.0	최재중 팔마신 용조합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8 군산시 경장동 464-1,2	옥서 새마을 금고	삼천오백만 원	근저당
102	"	"	529-1	답	32.0	32.0		국(재무부)			
103	"	"	529	답	295.0	38.8		국(재무부)			
104	"	"	791-1	답	124.0	124.0		국(재무부)			
105	"	"	791-2	답	37.0	37.0		국(재무부)			
106	"	"	791	답	1,439.0	128.7		국(재무부)			
107	"	"	789	답	744.0	744.0	최재중 팔마신 용조합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8 군산시 경장동 464-1,2	옥서 새마을 금고	삼천오백만 원	근저당
108	"	"	산220	구	1,488.0	193.4		국(재정경제부)			
109	"	"	789-6	전	639.0	639.0	조영서 외2인	군산시 미면 개사리			
110	"	"	789-1	전	762.0	112.2	조영서 외2인	군산시 미면 개사리			
111	"	"	산126-1	임	34,434.0	3,747.6	조찬기 외5인	군산시 옥서면 옥봉 리 11			
112	"	"	800-7	답	498.0	498.0		군산시			
113	"	"	800	답	5,198.0	315.6	홍성철	군산시 지곡동 158-1 은파코아루@ 106동 303호			
114	"	"	528-1	답	1,355.0	1,355.0	"	군산시			
115	"	"	528	답	572.0	153.0	홍성철	군산시 지곡동 158-1 은파코아루@ 106동 303호			
116	"	"	산128	임	29,818.0	5,250.1	"	"			
117	옥서	선연	202-21	임	39,908.0	2,734.4	"	"	군산 세무서	사역삼천만 원	근저당
118	"	"	202-12	장	15,008.0	47.1	"	"	동양시 멘트(주)	삼억원	근저당
119	"	"	산20-1	임	19,140.0	7,961.9	"	"			
120	"	"	210-51	전	80.0	80.0		국(재정경제부)			
121	"	"	210-49	대	130.0	130.0		국(재정경제부)			
122	"	"	210-34	대	134.0	134.0		국(재정경제부)			
123	"	"	210-33	대	164.0	164.0		국(산림청)			
124	"	"	210-50	대	11.0	11.0		국(산림청)			
125	"	"	210-74	대	36.0	36.0		국(재정경제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계	-		-		8,267	7,671.1		-			
126	옥서	선연	210-43	대	59.0	59.0		국(재정경제부)			
127	"	"	210-42	도	15.0	15.0		국(재정경제부)			
128	"	"	210-32	대	15.0	15.0		국			
129	"	"	210-73	대	199.0	199.0		국(재정경제부)			
130	"	"	210-29	대	234.0	234.0		국(산림청)			
131	"	"	210-39	대	84.0	84.0		국(산림청)			
132	"	"	210-70	대	120.0	120.0		국(재정경제부)			
133	"	"	210-71	전	60.0	60.0		국(재정경제부)			
134	"	"	210-28	대	321.0	321.0	한홍재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8			
135	"	"	210-38	대	77.0	77.0		국(재정경제부)			
136	"	"	210-52	전	63.0	63.0		국(재정경제부)			
137	"	"	210-57	전	119.0	119.0		국(산림청)			
138	"	"	210-56	임	192.0	192.0		국(산림청)			
139	"	"	210-53	도	716.0	226.0		국(산림청)			
140	"	"	210-31	도	69.0	69.0		국(산림청)			
141	"	"	210-54	전	222.0	222.0		국(산림청)			
142	"	"	210-67	전	48.0	48.0		국(재무부)			
143	"	"	210-30	대	218.0	218.0	최정순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867-12			
144	"	"	210-69	임	389.0	389.0		국(재정경제부)			
145	"	"	210-55	대	202.0	202.0		국(재정경제부)			
146	"	"	210-66	전	188.0	188.0	이미열	군산시 소룡동 1323-13 동아 @102동 810호			
147	"	"	210-20	도	137.0	31.1		국(산림청)			
148	"	"	210-68	전	132.0	132.0		국(재정경제부)			
149	"	"	210-72	전	703.0	703.0		국(재정경제부)			
150	"	"	산27-23	임	3,685.0	3,685.0	정영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056-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계	-		-		22,636	14,382.2		-			
151	옥서	선연	211-38	전	905.0	905.0		군산시			
152	"	"	211-37	전	527.0	527.0		군산시			
153	"	"	211-39	전	76.0	76.0	문재호	전남 목포시 죽 동 96-3 한신 힐빌리지 702호			
154	"	"	211-35	전	323.0	323.0	임세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11-1			
155	"	"	211-36	전	835.0	835.0		국(재무부)			
156	"	"	211-34	전	680.0	680.0	임세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11-1			
157	"	"	211-40	전	55.0	55.0		국(재무부)			
158	"	"	211-41	전	58.0	58.0		국(재무부)			
159	"	"	211-44	전	24.0	24.0		군산시			
160	"	"	211-19	도	413.0	125.3		국(건설부)			
161	"	"	211-43	전	61.0	61.0		국(재무부)			
162	"	"	211-42	전	212.0	212.0		국(재무부)			
163	"	"	213-3	전	102.0	102.0		군산시			
164	"	"	212-1	전	6.0	6.0	최연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31			
165	"	"	2089	구	2,238.0	238.5		국(국방부)			
166	옥서	옥봉	1694	구	3,314.0	209.8		국(농림수산부)			
167	"	"	1696	도	1,527.0	224.4		국(건설부)			
168	"	"	812-3	답	904.0	904.0		군산시			
169	"	"	813-1	답	2,414.0	2,414.0		군산시			
170	"	"	814-1	답	2,593.0	2,593.0	김기윤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56			
171	"	"	815-1	답	1,275.0	1,275.0		군산시			
172	"	"	1695	구	1,695.0	135.2		국(농림수산부)			
173	"	"	819-1	답	1,976.0	1,976.0	이순자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82-11			
174	"	"	818-4	답	92.0	92.0	신영철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838-2			
175	"	"	844-4	답	331.0	331.0		군산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계	-		-		11,491	8,974.6		-			
176	옥서	옥봉	844-5	답	119.0	119.0		군산시			
177	"	"	840-1	답	252.0	252.0	고영주	군산시 금광동 172 삼성@ 6동 506호			
178	"	"	839-7	전	79.0	79.0		국(국방부)			
179	"	"	839-8	전	1,423.0	1,423.0		국(국방부)			
180	"	"	산192-14	임	1,240.0	1,240.0	강우신외 1인	군산시 나운동 737-1 동진진주3차@ 104동 1104호	군산예협 농협	임전 결(광우 차분)	근저당
181	"	"	838-5	도	132.0	35.3	김태화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82	"	"	838-4	도	324.0	324.0	강선국외 1인	전북 군산시 금광동 159			
183	"	"	841	답	992.0	992.0		국(국방부)			
184	"	"	839-4	도	231.0	231.0		군산시			
185	"	"	839-5	전	185.0	185.0		국(국방부)			
186	"	"	842-1	전	298.0	298.0		군산시			
187	"	"	842-2	도	63.0	63.0		군산시			
188	"	"	842-3	전	36.0	36.0		군산시			
189	"	"	843-2	도	109.0	109.0		군산시			
190	"	"	843-3	답	3.0	3.0	홍간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45			
191	"	"	843-1	답	96.0	96.0		군산시			
192	"	"	839-3	대	192.0	192.0		국(재무부)			
193	"	"	845-2	도	96.0	96.0	김부회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56			
194	"	"	산198-3	임	844.0	844.0		국(산림청)			
195	"	"	818-2	도	188.0	44.6	진길웅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27			
196	"	"	844-2	도	281.0	281.0	김부회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56			
197	"	"	818-3	답	1,425.0	263.3	이이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838-2			
198	"	"	844-6	답	56.0	56.0		군산시			
199	"	"	844-3	답	1,567.0	452.4	황선규	군산시 나운동 781-10			
200	"	"	845-1	답	1,260.0	1,260.0		군산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계	-		-		17,630	11,385.7		-			
201	옥서	옥봉	산199-1	임	694.0	694.0		국(산림청)			
202	"	"	846	답	3,874.0	3,874.0	고영주	군산시 금광동 172 삼성아파트 6동 506호			
203	"	"	846-1	도	899.0	507.7		국(농수산부)			
204	"	"	847-7	도	1,200.0	1,076.8		국(국방부)			
205	"	"	848-1	답	5,524.0	944.0	남기화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84-2	옥구 농협	사천구 백만원	근저당
206	"	"	847-8	도	813.0	257.9		국(국방부)			
207	"	"	847-2	전	549.0	549.0		군산시			
208	"	"	847-4	답	255.0	255.0		군산시			
209	"	"	861-7	도	367.0	242.5		국(국방부)			
210	"	"	861-4	답	36.0	36.0	소진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50			
211	"	"	861-1	전	797.0	797.0		군산시			
212	"	"	861-8	도	33.0	33.0		국(국방부)			
213	"	"	861-5	전	23.0	23.0	소진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50			
214	"	"	860-7	대	200.0	200.0		군산시			
215	"	"	860-12	대	146.0	146.0		군산시			
216	"	"	860-5	도	383.0	383.0		국(국방부)			
217	"	"	860-11	대	40.0	40.0	김중찬	군산시 사정동 483-18			
218	"	"	860-3	도	588.0	347.4		국(농수산부)			
219	"	"	860-13	답	9.0	9.0		군산시			
220	"	"	860-1	대	296.0	296.0	김중찬	군산시 사정동 483-18			
221	"	"	859-7	답	155.0	155.0		군산시			
222	"	"	860-9	전	380.0	380.0		군산시			
223	"	"	859-8	답	68.0	68.0		군산시			
224	"	"	860-6	전	23.0	23.0		국(국방부)			
225	"	"	867-5	도	278.0	48.4		국(농수산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자		비고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계	-		-		32,401	4,491.9		-			
226	옥서	옥봉	860-2	도	307.0	307.0		국(국방부)			
227	"	"	859-6	전	1,100.0	1,100.0		군산시			
228	"	"	859-2	도	221.0	221.0		국(국방부)			
229	"	"	858-2	도	182.0	182.0		국(건설부)			
230	"	"	857-3	도	3.0	3.0		군산시			
231	"	"	858-1	도	152.0	152.0		국(국방부)			
232	"	"	857-7	잡	212.0	212.0	김명원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857-1	옥구 농협	이억천오백 만원	근저당
233	"	"	858-4	답	10.0	10.0		국(국방부)			
234	"	선연	2092	도	145.0	42.8		국(건설부)			
235	"	옥봉	1698	도	783.0	68.0		국(건설부)			
236	"	선연	384-8	답	63.0	40.5	한국공항 공사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과해동 274			
237	"	"	384-33	대	165.0	165.0	김복순	대전 중구 유천 동 299-40	옥구 농협	육천삼백만 원	근저당
238	"	"	384-7	잡	1,610.0	7.3	한국공항 공사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과해동 274			
239	"	"	384-27	답	238.0	135.0		전라북도			
240	"	"	384-6	잡	102.0	86.3	한국공항 공사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과해동 274			
241	"	"	384-29	답	221.0	88.5		전라북도			
242	"	"	384-20	도	555.0	261.1		국(재무부)			
243	"	"	384-23	답	427.0	77.0		전라북도			
244	"	옥봉	산 141-1	임	25,905.0	1,333.4	홍성철	군산시 지곡동 158-1 은파코아 루@트 106동 303 호	쌍용양 회공업 (주)	팔천만원	근저당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6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 4. 16

군 산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사업시행지 : 군산시 지곡동 31-37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아파트 신축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 선 명	폭원 (m)	연장 (m)	개설면적 (㎡)	노 선 명	폭원 (m)	연장 (m)	개설면적 (㎡)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2 11	30 (15)	990 (334)	5,019	대로 2 11	30 (15)	990 (344)	5,145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2 27	15	1,030 (295)	4,547	중로 1 17	20 (10)	380 (190)	2,214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2 582	8	114	1,097	소로 2 582	8	114	961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2 787	8	38	313	소로 2 577	8	371 (295)	2,543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2 788	8	20	187	소로 2 685	8	20	187	노선명변경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2 585	8	84 (8)	64			
합 계	5개 노선	8~15	(801)	11,163	6개 노선	8~15	(971)	11,114			

※ ()은 금회 개설부분임. 소로2-788호선의 경우 군산시 고시 제2009-94호(2009.11.16) 소로2-685호선으로 변경됨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주식회사 중남주택 대표 양도연	주식회사 민성디앤씨 대표 황종택
주 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865-3 용경빌딩 2층	전북 군산시 조촌동 865-3 용경빌딩 2층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구분	당초	변경
착수예정일	2005년 1월 일	2010년 7월 일
준공예정일	2007년 4월 일	2012년 12월 31일

4.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0-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의 소유권과 소유원 이외의 권리자 조서

▶ 대로2-11호선

인입번호	토지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토지변경사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권면적(m ²)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권면적(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지곡동	34-4	답	810	325	34-4	답	810	325	0	변경없음	최우석	군산시 임피면 출신리 425-2					
												유정엽	군산시 내운동 92 금호타운아파트 206동 301호					
												김해영	군산시 내운동153-11 비사발아파트101동1001호					
2	지곡동	34-12	답	992	261	34-12	답	992	261	0	소유자변경	유한회사 전라종합건설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8-1	주식회사에쓰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내운동 124-5	근저당 지상권		
3	지곡동	34-13	답	661	32	34-13	답	661	32	0	소유자변경	주식회사 충남주택	군산시조촌동865-3 용경빌딩2층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65 현대아파트 108동 803호	근저당	
4	지곡동	35-1	도	102	102	35-1	도	102	102	0	변경없음	국(농수산부)						
5	지곡동	35-2	답	713	472	35-2	답	713	472	0	소유자변경	엄기정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녹촌리181-4	주식회사에쓰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내운동 124-5	근저당 지상권		
6	지곡동	35-6	답	112	112	35-6	답	112	112	0	변경없음	임채봉	군산시 삼학동 364-6					
7	지곡동	35-8	도	99	99	35-8	도	99	99	0	소유자변경	윤경희	전라북도진주시와산구서산동572 서신이면한세생110-1004					
8	지곡동	36-6	답	214	214	36-6	답	214	214	0	변경없음	군산시						
9	지곡동	36-11	도	26	24	36-11	도	26	24	0	소유자변경	서인성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42-5 도원해나지아파트 104-1303					
10	지곡동	36-12	답	3,041	1,320	36-37	답	1,491	1,320	0	건교부에서 관리구속됨	국(재정경제부)						
11	지곡동	36-13	도	50	7	36-13	도	50	7	0	36-12에서분할 소유자변경	정성희	대전광역시동구용전동 181-1 새파아파트 102동1102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리가 75	근저당 지상권		
12	지곡동	36-14	답	151	151	36-14	답	151	151	0	소유자변경	한정희	전라북도 군산시 개성동 309					
13	지곡동	36-17	도	20	7	36-17	도	20	7	0	변경없음	임채봉	군산시 삼학동 364-6					
14	지곡동	137-1	답	7,131	32	137-1	답	7,131	189	157	소유자변경	고종규	군산시 사정동 496-9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리가 75	근저당 지상권		
												김영국	익산시 주원동 229-3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리가 75	근저당 지상권		
												장정선	군산시옥산면평릉리 513-4			지상권		
												양경희	군산시내운동1255-8 현대아파트105동1102호			지상권		
												박미자	군산시내운동155-10 동신아파트106동1501호			지상권		
												이상언	군산시미룡동806-1미룡 (2)주공아파트207동1304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리가 75	근저당		
												김종기	군산시내운동345 롯데아파트102동603호			지상권		
												유호석	서울영광구불광동248 미성아파트11동110호			지상권		
												유종성	전주시덕진구인무동1가 757현대아파트104동201호			지상권		
												이승진	군산시미룡동900-1미룡 (3)주공아파트315동202호			지상권		
15	지곡동	137-2	구	2,667	107	137-2	구	2,667	107	0	변경없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지곡동	138-1	답	3,650	465	138-5	답	454	431	-34	138-1에서분할 소유자변경	김기현	군산시미룡동806-1미룡 (2)주공아파트204동1001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리가 75	근저당 지상권		
17	지곡동	139-2	답	6,516	789	139-5	답	793	793	4	139-2에서분할 소유자변경	유한회사 성원개발	전라북도군산시조촌동 865-32층	주식회사에쓰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내운동 124-5	근저당 지상권		
18	지곡동	140-5	답	1,539	457	140-5	답	1,539	457	0	변경없음	박영기	군산시 비응동 63					
19	지곡동	479-6	도	43	43	479-6	도	43	42	-1	소유자주소변경	양준엽	군산시수송동933-1수송동 제일아파트102동1202호	군산일명 신용협동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9-6	근저당		
총계		19필지		28,537	5,019	19필지		18,068	5,145	126	변경없음	국(농수산부)						

▶ 종로1-17호선 (신규 편입노선)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신 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 용
1	지곡동	137-1	답	7,131	203	고종규	군산시 사정동 496-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지상권	
						김영국	익산시 주현동 229-3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지상권	
						장정선	군산시옥산면생봉리 513-4			지상권	
						양경희	군산신남동1255-8 현대아파트106동1102호			지상권	
						박미자	군산신남동155-10 동천아파트106동1501호			지상권	
						이상언	군산시미포동896-1미포 (2)주공아파트207동1301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김종기	군산신남동945 롯데아파트102동603호			지상권	
						유호석	서울특별시구로구광동248 미성아파트11층1102호			지상권	
						유종성	전주시미포동104호동1가 737현대아파트104동201호			지상권	
						이승진	군산시미포동900-1미포 (3)주공아파트315동202호			지상권	
고치영	군산시 개정동 585-20			지상권							
2	지곡동	138-3	답	967	538	김기현	군산시미포동896-1미포 (2)주공아파트207동1001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지상권	
3	지곡동	138-5	답	454	23	김기현	군산시미포동896-1미포 (2)주공아파트207동1001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지상권	
4	지곡동	139-4	답	188	182	유한회사 성원개발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65-32	주식회사에스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근저당 지상권	
5	지곡동	143-1	답	1,392	721	주식회사전일상호 저축은행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태평동44-1				
6	지곡동	148-5	답	665	172	군산시					
7	지곡동	148-6	답	478	375	유한회사 평창산업개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태평동700-3	주식회사에스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근저당 지상권	
총 계		7필지		11,275	2,214						

▶ 소로2-577호선 (신규 편입노선)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신 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 용	
1	지곡동	31-16	답	3,464	253	유복수	군산시 지곡동 305					
2	지곡동	31-5	답	4,221	680	유한회사 성원디앤씨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8-1	주식회사에스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근저당 지상권		
3	지곡동	31-8	답	905	46	문정옥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 561삼성아파트1동1107호	주식회사에스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근저당 지상권		
4	지곡동	32-10	답	310	70	유한회사 가변종합건설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2-4	주식회사에스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근저당 지상권		
5	지곡동	32-11	답	3,631	665	유한회사 가변종합건설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2-4	주식회사에스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근저당 지상권		
6	지곡동	137-2	구	2,667	13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	지곡동	142-5	답	1,481	153	김도연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 657신내아파트304동509호	주식회사에스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근저당 지상권		
8	지곡동	142-11	답	1,890	256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 행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태평동44-1					
9	지곡동	143-2	답	1,875	286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 행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태평동44-1					
총 계		9필지		20,444	2,543							

▶ 소로2-585호선 (신규 편입노선)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신 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 용
1	지곡동	36-30	도	27	11	한정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09				
2	지곡동	36-32	답	300	37	엄기정	경기도 남양주시화도읍 북촌리181-4	주식회사에스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근저당 지상권	
3	지곡동	36-38	답	16	16	김재규	전라북도 전주시미포동109 17127-6현대아파트비동109 호				
총 계		3필지		343	64						

▶ 소로2-582호선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당 초				변 경				증·감	토지변경 사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지곡동	32-1	답	4,456	311	32-8	답	311	311	0	32-1에서분 할 소유자변경	천숙자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439-22					
2	지곡동	32-10	답	310	134	32-10	답	310	52	-82	소유자변경 기반종합건설	유한회사 기반종합건설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2-4	주식회사에스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근저 당 지상 권	
3	지곡동	32-11	답	0	0	32-11	답	3,631	10	10	소유자변경 기반종합건설	유한회사 기반종합건설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2-4	주식회사에스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근저 당 지상 권	
4	지곡동	33-2	답	36	1	33-2	답	36	1	0	변경없음	양병희	군산시 서항남동 850-30					
5	지곡동	33-4	답	3,719	267	33-12	답	267	267	0	33-4에서 분할	채규희	군산시 선양동 904					
6	지곡동	36-7	도	238	11	36-30	도	27	0	-11	36-7에서분 할 소로2-585 로편입	한정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09					
7	지곡동	36-8	답	1,759	300	36-32	답	300	263	-37	36-8에서분 할 소유자변경	엄기정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녹촌리181-4	주식회사에스 상호저축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4-5		근저 당 지상 권	
8	지곡동	36-9	답	116	30	36-34	답	30	30	0	36-9에서 분할	채규희	군산시 선양동 904					
9	지곡동	36-15	답	136	16	36-38	답	0	0	-16	36-15에서분 할 소로2-585 로편입	김재규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송 천동1가127-6현대아파트 비동109호					
10	지곡동	479	도	1,691	27	479	도	1,691	27	0	변경없음	국(농수산부)						
총 계		10필지		12,461	1,097	10필지		6,603	961	-136								

▶ 소로2-685호선 (소로2-788호선에서 노선명 변경 : 군산시 고시 2009-94호, 2009.11.16, 재정비)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당 초				변 경				증·감	토지변경 사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지곡동	36-7	도	238	16	36-30	도	27	16	0	36-7에서분 할 소유자변경	한정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09					
2	지곡동	36-12	답	3,041	171	36-37	답	1,491	171	0	36-12에서분 할 소유자변경	정성희	대전광역시동구용전동181- 1 새피아이파트102동1102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 당 지상 권	
총 계		2필지		3,279	187	2필지		1,518	187	0								

◎ 군산시 공고 제2010 - 647호

시보 제341호(2010년 3월 30일) 군산시 공고 제2010-442호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오류 정정

1. 정정사유

시보 제341호(2010년 3월 30일) 군산시 공고 제2010-442호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중 오·탈자 등의 오류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정정내용

관련 조문	정정 전	정정 후
공고일자	2010년 3월 19일	2010년 3월 30일
안 제3조 제2항	대학교 1회 1,00,000원	대학교 1회 1,000,000원
의견제출	2010년4월 8일	2010년 4월 20일
별지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3. 의견제출

정정된 조례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지역경제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전화063-450-6232 팩스
063-450-639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취업노사담당 (전화
063-450-6232, 담당자:이영수, E-mail:LEECY319@korea.kr)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시 근로자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추천)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의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조합대표 또는 사용자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학교장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3. 군산시 (사용자·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고등학생 1회 500,000원과 대학생 1회 1,000,000원 으로 지급한다.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자녀학비 보조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체 및 영세사업체
2. 기타 자녀학비보조가 없는 사업체
3. 학비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체 및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자

② 장학생 지급대상자 경합시 우선순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제조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현장근로자의 자녀로서 성적우수자
2. 기타 근로자의 자녀로서 성적우수자

③ 회사로부터 근로자 자녀장학금 또는 학비전액 보조를 받고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보호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지급내역을 통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근무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학 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학교명		학년.반	
	근로자와의 관 계			
<p>「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p> <p>군산시장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근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추천) 1부. 2. 군산시 (사용자·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1부. 3. 근로자 급여 명세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학교명		학년.반	

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성적	학교생활
1. 평균 점 2. 석차(학년)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1. 품행 2. 학습태도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군산시 사용자 장학생 추천서
 노동조합

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로자 근무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학 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남/여)
	학교명		학년.반	
	근로자와의 관계			
사업장	사업장 명		전화번호	
	주 소			

첨부서류 : 1. 재직증명서 1부.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

년 월 일

추천자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 대표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법무계/계장/오진이] :법제사전심사 제 19호 (2010. 3. 17)

◎ 군산시 공고 제2010 - 648호

군산시 시보 제341호(2010년 3월 30일) 군산시 공고 제 2010-493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귀농·귀촌자지원조례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중오류정정

1. 정정사유

군산시 시보 제341호(2010년 3월 30일) 군산시 공고 제2010-493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탈자 등의 오류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정정내용

관련 조문	정정 전	정정 후
제 명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안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3. 의견제출

정정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농정과 [전화(063)450-4373 팩스(063)452-8167]

-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농업진흥계장 임철혁[전화 (063)450-4373], 담당자 김용곤[전화(063)450-4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농업인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귀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률 제고

2. 주요내용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 시행규칙 목적 정의 : 제1조
- 귀농·귀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조
- 군산시 귀농·귀촌자의 지원 자격 명시 : 제3조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 제4조
 - 농업창업 자금 지원 : 세대당 20,000천원
 - 농지구입(논, 밭, 과수원)자금 : 세대당 60,000천원
 - 단가 : 실거래 가격의 90% 이내
 - 주거지원(농촌지역 주택에 한 함)
 - 신축 40,000천원, 주택구입 30,000천원, 주택수리 10,000천원
 - 기타 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지원등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규정 : 제6조

3. 참고사항

1. 관련법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2. 예산조치 :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자금
3. 협의 등 : 기획예산과(법무, 예산, 기획계)
4.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기 타
 - 1) 제정안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예정일 : '10. 3. 30. ~ 4. 20.(20일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귀촌 위원회의 운영) ①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의 귀농·귀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귀촌자의 지원 자격) 조례 제6조 및 제8조 귀농·귀촌자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1. 귀농·귀촌자 세대구성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 2. 귀농·귀촌자 지원 신청은 귀농·귀촌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6조 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육훈련지원: 군산시 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 가. 지원대상: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3조를 준용 한다.
 - 나. 지원금액: 세대당20,000천원 까지 용자
- 3. 농지구입자금 지원
 - 가. 지원대상: 논,밭,과수원에 한한다
 - 나. 지원금액: 세대당60,000천원 까지 용자 (실거래 가격의 90% 이내)
- 4. 주거지원
 - 가. 지원대상: 농촌주택에 한하며 주택 신축, 주택구입, 주택수리 중 세대별 1분야만 지원
 - 나. 지원금액: 신축40,000천원, 주택구입30,000천원, 주택수리10,000천원까지 용자
- 5.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농업분야 보조사업 중 개별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 선정한다.

- ②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농·귀촌위원회에 부의 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사업비 중 보조 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융자 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할 수 있다.
- ⑤ 융자금은 세대당 100,000천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⑥ 융자금은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융자에 대한 사항은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멘토 지원) 귀농·귀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덕망있는 주민을 후견인으로 선정 하여야 하며 후견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조례 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결정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642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1.1, 법률 제9924호)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고 서식을 정비함.
- 나. 농업소득세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063-450-4255, 팩스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063-450-42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138조 및 제1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및 제47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3(대장 정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안제140조의 3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1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4(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부터 제77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6(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과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과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징수한다.

- 소득금액×제한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frac{\text{소득세} \cdot \text{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text{소득세} \cdot \text{법인세 세율} + (\text{소득세} \cdot \text{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⑤ 부과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제14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7(보통징수) ① 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79호부터 제79호의4까지 서식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4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8(대장 정리) ① 시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제5절(제153조부터 제159조까지) 및 제10절(제169조부터 제173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서식부터 제50호까지 및 제73호서식부터 제79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부터 제6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9호의2서식부터 제79호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군산시시세 부과징수규칙 서식목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257mm(미 색모조 80g/ m²)

(별지 제75호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364mm×257mm(미 색모조 80g/ m)

(별지 제76호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도 물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7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장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m²)

(별지 제78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재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조사월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일자	납부일자	담당자	계장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피 색모조80g/ m²)

(별지 제79호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피 색모조 80g/ m²)

(별지 제79호의2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피 색모조 80g/ m²)

(별지 제79호의3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 민 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피 색모조 80g/ m²)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서식 목록

연번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규정
1	1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제5조제1항, 6조3항, 17조3항, 24조 2항, 12조
2	2	징수(감액·결손) 결정액통보서	5조4항
3	3	○○연도 ○○기분(신고납부분) ○○세 수납부	6조4항, 21조
4	4	징수부	5조3항, 24조4항
5	5	신고납부 시세 FAX·우편 접수대장(회서식)	10조3항
6	6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12조1항, 28조3항
7	7	○○연도 ○○기분 ○○세 송달불능부	12조2항, 15조, 28조 3항
8	8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처리부(회서식)	17조1항
9	9	○○연도 ○○기분(신고납부분) ○○세 소인불일치자료 처리대장	22조1항
10	10	시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23조
11	11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용 통보서	24조1항
12	12	세입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회서식)	25조2항
13	13	연대납세의무자 과오납금 지급 동의서	26조3항
14	14	과오납금 총당 결의서	27조3항
15	15	과오납금 지급대상자 통보서	28조1항
16	16	이월체납액 정리부(회서식)	35조1항
17	17	징수유예 정리부	36조1항
18	18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40조1항
19	19	납세담보에 의한 시세 총당통지서	29조7항, 40조2항
20	20	납세담보관리대장(회서식)	43조1항
21	21	체납액 정리부(회서식)	4조2항
22	22	지방세 체납 정리표	45조
23	23	징수촉(수)탁 정리부	46조
24	24	재산 압류 대장	55조1항
25	25	압류 재산 보관증	56조1항, 62조1항

연번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규정
26	26(갑)	천연과실 인도요구서	57조4항
27	26(을)	법정과실 인도요구서	57조4항
28	27	등기부(등록부) 열람대장	56조3항, 63조1항
29	28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촉탁서	69조1항, 80조2항
30	29	압류자동차(기계장비) 인수증명서	70조3항
31	30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조서	84조, 87조1항
32	31	공매공고	85조3항
33	32	평가감정서	87조3항
34	33	경매조서	91조2항
35	34	입찰규정(표지)	92조
36	35	경매규정(표)	92조
37	36	납입서	94조
38	37	광업권 이전등록촉탁서	96조2항
39	38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매각통지서	제97조
40	39	영수증	102조
41	40	공탁서(금전)	103조2항
42	41	공탁통지서(금전공탁)	103조2항
43	42(갑)	결손처분표	122조
44	42(을)	결손처분표	122조
45	43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129조7항
46	44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29조8항
47	45	심의서	129조12항
48	46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140조1항
49	47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감면 처리부(황서식)	140조1항
50	48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황서식)	140조의2 1항
51	49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황서식)	140조의2 2항
52	50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황서식)	140조의2 3항, 140조의5 항
53	51	재산세대장 직권등재 결의서	142조1항
54	52	공용공익사업용재산 폐지신고서	142조1항
55	53	건축물조사표	143조

연번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규정
56	54	선박조사표	143조
57	55	항공기 조사표	143조
58	56	재산세 비과세·감면처리부(홍서식)	144조1항
59	57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홍서식)	145조1항
60	58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고서	145조2항
61	59	자동차세 분할신고납부 처리부(홍서식)	145조3항,146조 항·항
62	60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납부 신고서	146조2항
63	61	자동차 비과세.감면 처리부(홍서식)	148조
64	62	영치증	150조
65	63	주행세 신고납부 처리부	152조
66	67	담배소비세액 납입대장	161조
67	68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서	162조2항
68	7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감면 처리부(홍서식)	140조의4 1항
69	74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홍서식)	140조의5 1항
70	7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홍서식)	140조의5 1항
71	7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홍서식)	140조의5 1항
72	77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홍서식)	140조의5 1항
73	7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홍서식)	140조의6 5항
74	79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홍서식)	140조의7 1항
75	79의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홍서식)	140조의7 1항
76	79의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홍서식)	140조의7 1항
77	79의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홍서식)	140조의7 1항
78	80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127조의2 2항
79	81	고액채납(결손)자 현황조사서	127조의2 2항
80	82	과세내역 및 채납처분 진행상황	127조의2 2항
81	83	지방세 채납자 명단 공개요청서	127조의2 3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7조(균등할 주민세) ①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균등할로 구분하여 과세한다.</p> <p>②개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 경우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납세의무가 없고, 동일한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는 그 자의 세대주가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가 있다.</p> <p>③개인사업자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자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도 연간금액으로 환산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p> <p>④법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p>	<p>제137조(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p> <p>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p> <p>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 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p> <p>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p>

현행	개정안
<p>제138조(특별징수) ①소득할 주민세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와 동시에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p> <p>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 서식의 원천징수의무자 대장과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39조(보통징수) ①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47호 서식 내지 제49호 서식의 소득할주민세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②주민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p>	<p><삭 제></p>
<p>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주민세를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p> <p>②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법 제26조 납기전 징수사유 및 부과제척 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p>	<p>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및 제47호 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의2 지방소득세</p> <p>제140조의4(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부과부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p> <p>제140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부터 제77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부과부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140조6(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농업소득세</p> <p>제153조(대장비치) 농업소득세 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89호 서식의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정리 하여야 한다.</p> <p>제154조(소득금액)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및 제83호 서식에 의하여 농업소득자별, 필지별 식재면적, 작물명, 작황, 수확량 등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p> <p>제155조(수입금액 열람공고) 수입금액 등의 공람장소와 기간을 공람 개시일 5일전까지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56조(농업소득사위원회의 일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는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한다.</p> <p>제157조(소득금액 통보 및 접수) ①세무공무원은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자가 소유하는 관내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자의 주소지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다른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소득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 무자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산출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58조(재해지 조사결정) 세무공무원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 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작황개황조사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59조(농업소득실태조사 등) 세무공무원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에 대하여 필지별, 작물명, 식재면적, 작황, 수확량 등 기타 필요한 상황을 현지 조사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의 실태조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0절 사업소세</p>	<p><삭 제></p>
<p>제169조(신고납부)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 서식 및 제74호 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한 사업소세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5호 서식 또는 별지 제76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p> <p>③신고납부 기한내에 사업소세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 서식에 의한 수정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70조(보통징수) ①과세자료를 통보 받거나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 또는 제77호 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②사업소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통징수 한다. 다만,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p>	<p><삭 제></p>
<p>제171조(대장정리) ①시행규칙 제100호 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 되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9.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 <p>②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 대장 등에 대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72조(종업원의 급여 총액조사) 부과 부서는 매년 1회 이상은 당해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73조(비과세 및 감면) ①사업소세를 비과세·면제 및 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제79호 서식에 의거 사업소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p> <p>②사후관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과세·감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1개월 전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p> <p>③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소세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법 제26조의 납기전징수 사유 및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p>	<p><삭 제></p>